

제818호

무주 공보

2026. 7. 15.(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고 시

- 무주군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변경(중대한 변경) 고시 23

공 고

- 2026년 2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공고 25

무주군 공고 제2026 - 778호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계획·보전관리·오염방지·시설관리 등 농촌용수구역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 신설 :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체계 확립(안 제1조)
- 나. 정의 조항 보완 : 농촌용수구역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다. 운영계획 강화 : 장기·연차별 계획, 오염방지 대책 포함(안 제3조)
- 라. 보전·관리 : 군수의 조사 및 행정지원 의무화(안 제4조)
- 마. 오염방지 : 수질검사·관측망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
- 바. 시설관리 : 시설물 대장 작성·사후관리 규정(안 제6조~제7조)
- 사. 목적 외 사용 : 영향 검토 후 공급·사용 가능(안 제8조)
- 아. 사용 제한 공고 : 제한 시 공보·누리집 공고 의무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 전자우편: uiuilolo@korea.kr
- 팩스: 063-320-2180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설과 기반조성팀 (063-320-2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5.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조작 및 유지·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수원의 활용
2. 농촌용수의 공급 및 운영 방안
3.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이용·관리 방안

③ 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2. 시설물 대장에 따라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조사, 조사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

② 군수는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용수의 공급 및 사용) 군수는 농촌용수 목적 외의 용수를 공급하거나 용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
2. 농촌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3. 농촌환경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용 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무주군 공보 또는 무주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 - 779호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누적된 부분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법령·용어 불일치를 바로잡고, 수리계 조직 기준과 경비 부과·회계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보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 수리계 정의 신설 (안 제2조).
- 나. 조직 기준 상향 : 수혜지역 면적을 5만㎡ 이상으로 확대 (안 제4조).
- 다. 경비 부과 기준 변경 : 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산정 (안 제11조).
- 라. 예산·회계 지침 변경 : 군수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지침 통보 (안 제13조).
- 마. 지도·감독 권한 강화 :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 명확화 (안 제15조).
- 바. 해산 요건 보완 : 기존 사유 유지, 참고 법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추가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 전자우편: uiuilolo@korea.kr
- 팩스: 063-320-2180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설과 기반조성팀 (063-320-2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란 규약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

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부터 1:25,000까지의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

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의 임원을 두며, 그 선출방법·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그 전년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수리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수리계명칭					
계 원 수					
구역면적		㎡			
수혜면적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형태	소재지	수혜면적(㎡)	비 고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무 주 군 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부터 1:25,000까지의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요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 등록부(제5조 관련)

번호	수리계 명칭	수리 계장	소재지	시설 명칭	설치 연월일	수혜 면적 (m ²)	계원수 (인)	등록 일자	비고

수리계 등록증

수리계 명칭:

성명(수리계장):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구역면적: m^2

수혜면적: m^2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서(제15조 관련)

수리계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수 신:		발 신:		수리계장 (인)	
제 목: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 현황					
등록일자	계원수 (명)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	수혜면적 (㎡)	수리계장 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 (㎡)	부과 계원수(명)	부과 내역 현금(원)	징수액 (원)	징수율 (%)	감가상각 총당금 잔액(원)
※ 경비 징수액 및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총당금 현황					
예산액(원)	결산액(원)	결산액 증개.보수비			
		보조(원)	차입금(원)	자부담(원)	계(원)
감가상각총당금					
전년 이월(원)	당년 적립액(원)	당년 사용액(원)	총당금 잔액(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	정비 부문	경비소요액			비고
		현금(원)	기타(원)	계(원)	

무주군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변경(중대한 변경) 고시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무주군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무 주 군 수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개요

가. 사업명 :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7개년)

다. 위치 : 무주읍 당산리 568, 569번지 일원

라. 총사업비 : 154.8억원(국비 50, 도비 8.3, 군비 25, 자체 71.5)

마. 사업내용

- 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노인복지, 주민교육, 편의시설) 및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바. 사업시행자 : 무주군수

사. 사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력 거점조성

- 목표 : 고령친화공간 조성, 환경친화공간 조성, 공동체 친화공간 조성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 반디나래지원센터(HW)			49.8	33.2	-	70.1	-	-	-
	부지매입비(HW)		10.8	7.2	-	-	-	-	-
	조성비	공사비	35.5	23.6	-	68.6	-	-	-
		주차장	-	-	-	0.6	-	-	-
		치유정원	-	-	-	0.9	-	-	-
	설계·감리 공모(SW)		3.5	2.4	-	-	-	-	-
② 콘텐츠 개발 및 운영(SW)			0.2	0.1	-	1.4	-	-	-

3. 변경내용

- 사업기간: (당초) 2021년 ~ 2026년(6개년) → (변경) 2021년 ~ 2027년(7개년)
- 총사업비: (당초) 106.8억원 → (변경) 154.8억원(증48억원)
- 마중물사업비 H/W 재원변경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2026. 7. 15. ~ 2026. 8. 14.(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다. 기타 세부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063-320-276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공고('26년2분기)

2026.04.01.부터 2026.06.30.까지 우리군에 신고된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 공고내역

- 가. 공 고 명 : 2026년 2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6.07.15. ~ 2026.08.14. (30일간)
- 다. 공고대상 : 무주군 소재 민간임대주택
- 라. 공고내용 : 2026. 2분기 임대차계약(변경) 신고내역
- 마.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바. 추진근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사.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현황

연번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조건(원)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로 229	20260410	20280409	10,000,000	500,000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상굴암길 14-7	20260528	20310527	0	10,000
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로 229	20260602	20270601	10,000,000	500,000
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4	20260515	20330608	187,950,000	0